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단체신청 방법 안내

2023. 7.



목차



I. 보육교직원 자격제도 개요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	3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4
3.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종류	5
4.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및 발급	6
5. 자격 신청 및 발급절차	8

II. 보육교사 자격기준

1. 보육교사 자격기준	11
2.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13
3.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30

III.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방법

1. 단체신청 개요	43
2. 단체신청 시스템 사용방법	44
3. 단체신청 진행 절차	50

IV. 질문과 답변

1. 자격기준 및 발급	55
2. 보육실습	56
3. 신청취소 및 환불	59
4. 홈페이지 이용	59

V. 부록

[부록 1]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공문 예시(대학교)	63
[부록 2]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공문 예시(보육교사교육원)	64
[부록 3]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자 졸업획정 공문 예시	65
[부록 4]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자 환불요청 공문 예시	66
[부록 5] 보육실습확인서	67
[부록 6] 간접실습확인서	69
[부록 7]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70
[부록 8] 대면 교과목 확인서	71
[부록 9] 유사교과목 단체심의 요청 공문 예시	72
[부록 10] 유사교과목 확인서	73
[부록 11]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관리 매뉴얼	74



I. 보육교직원 자격제도 개요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

■ 도입 배경

-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어린이집 및 사군구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왔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불가능하여 자격 요건 심사의 어려움 발생,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에 문제가 제기됨
-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관리하고자 함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도입

- 2004.1.29.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 법 부칙(제7153호, 2004.1.29.) 제1조에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는 2005.1.30. 이후부터 시행됨

■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도입

- 2005.12.29.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 법 부칙(제7785호, 2005.12.29.) 제1조에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바,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제도는 2006.12.30. 이후부터 시행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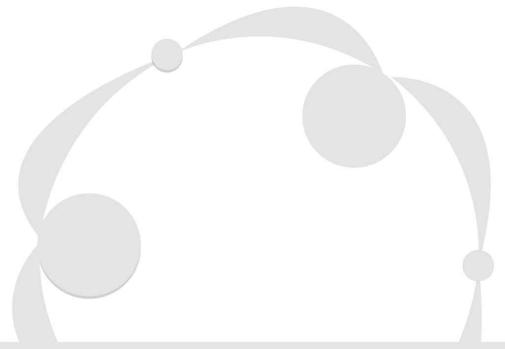
-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 9인당 1인의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어린이집 및 사군구청에서 특수교사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해 왔음
-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활발한 사회참여와 가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장애인아동복지 지원법」이 제정(2011.8.4.), 시행(2012.8.5.) 됨. 또한, 시행령 제정(2012.8.3.) 및 시행(2012.8.5.)으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2015. 7.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을 통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도입

- 2016.3.1.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순차적인 배치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고시(제2015-121호, 2015.7.1.) 「장애인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15.7.1.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를 도입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 장애인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는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춘 교사를 2016.3.1.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해야 함
 - 배치시기
 -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3.1.부터
 -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3.1.부터
 -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3.1.부터



II. 보육교사 자격기준

1 보육교사 자격기준

■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가.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

나. 적용대상

- 2014.3.1. 이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에서 규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종전 규정에 따른 기준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업무편람’ 참고
 -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포털 > 자료실 > 정책자료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업무편람’(22년 5월)

■ 자격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II. 보육교사 자격기준

■ 경력인정 범위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호~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신업체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제해로 인한 병기기간(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 보고방법

- 보육현장실습을 4주 직접실습과 2주 간접실습으로 진행한 경우,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제출 시
간접실습확인서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제출
- 6주 240시간을 모두 직접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간접실습확인서'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가. 신청 구분별 제출서류

- (개인신청) 졸업 이후, 자격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제출
- (단체신청) 졸업 전·후로 자격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각각 제출

구분		제출서류
개인신청		① 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③ 보육실습확인서, ④ 그 외 서류
단체신청	졸업 전	① 단체신청 공문 및 신청자 리스트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④ 보육실습확인서, ⑤ 그 외 서류 ※ ②~⑤까지 1인당 서류를 순서대로 스테이플러로 고정하여 제출 ※ 개별서류가 스테이플러클립 등 기타사무용품 인정불가로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리스트 순서대로 취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체서류 반송 처리
	졸업 후	① 졸업학정 공문 및 졸업자 리스트, ② 졸업증명서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 서류를 복사하거나 스캔하여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인정 불가

나. 단체신청 제출서류(졸업 전)

- 단체신청 공문 및 신청자 리스트
 - '졸업(예정)일자'와 '단체신청 인원'을 기재하고 '신청자 리스트'를 첨부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 기재 내용과 제출서류가 일치하여야 함
 - ※ 대학(교) 총장 또는 대학장 발행 공문에 한해서만 인정
 - 전자문서로 단체신청 공문을 제출하더라도 구비서류 제출 시, 공문 및 리스트를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신청자 리스트 출력 방법: 홈페이지 > 단체로그인 > 마이페이지(나의 자격증 진행현황) > 리스트 출력
 - 단체신청 완료 이후, 신청 취소자 발생 시 인원 변경에 대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결제수단에 따라 수수료 환불 요청 공문 제출 필요

□ 자격증 수수료 환불

- **환불기준:** 서류접수완료 전까지만 신청취소 및 환불 가능
- **환불방법:** 수수료결제 방법에 따라 처리방법 적용
 - (신용카드 및 실시간계좌이체) 자격증 신청취소 시, 자동 환불
 - (가상계좌) 자동 환불이 불가하며 학과장 발행 환불요청 공문 제출 필요(부록 4 참조)
 - ※ 자동 환불기준(신용카드: 카드사별로 상이 / 실시간 계좌이체: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경과 시, 가상계좌 환불 신청방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 ※ 가상계좌의 경우 환불 절차에 따라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신용카드 또는 실시간계좌이체 방법 추천

[보육실습] 코로나19 관련 보육실습 운영방안

- 코로나19 관련 규정으로 2022년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부터 비대면 교육 및 **실습을 대면으로 전환하여 운영(확진자 제외)**

- 보육현장실습 운영방법

- 2022년 2학기부터 보육현장실습은 총 6주, 240시간을 원칙으로 함
- 실습 기간 내, 2회 이상 분할실습도 허용 가능
- 코로나 확진(또는 자가격리, 유사증상 발현) 등의 경우 분할실습으로 직접실습 수행

- 2020년 1학기 ~ 2022년 1학기까지의 실습 운영방법

- 보육현장실습은 총 6주, 2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6주 직접실습이 불가능한 경우 4주 160시간은 보육현장 직접실습, 2주는 간접실습 방식^{*}으로 대체운영 가능
 - * 양성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1학점(15시간 이상)에 준하는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참관 등
- 2020년도 2학기부터 실습 기간 내, 2회 이상 분할실습도 허용 가능
 - * 단, 자격증 신청 시, 2회 이상 분할실습에 대한 증빙자료(출근부, 분할사유 공문 등) 제출
- 2020년도 2학기부터 코로나 확진(또는 자가격리, 유사증상 발현) 등으로 보육현장실습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실습 4주에 준하는 간접실습을 교육기관 자체 계획하여 실시한 경우 인정함
 - * 상기의 경우 자격증 신청 시, 코로나 관련 증빙자료(진단서, 대학장 확인 서류 등) 제출 필수

교과목 개설학기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 2022년 1학기	2022년 2학기부터~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주직접실습+2주간접실습• 2회까지 분할실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주직접실습 + 2주 간접실습• 2회 이상 분할실습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주 직접실습• 2회 이상 분할실습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자·자가격리자, 유사증상 발현자의 실습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관 자체계획에 따른 직접 실습에 준하는 간접 실습 허용* 추가 증빙자료 제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확진(또는 자가격리, 유사증상 발현) 등의 경우 분할실습으로 직접실습 수행* 추가 증빙자료 제출 필요

-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2년 보육교사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 운영사항 안내(2022년 2학기) 참고
- * 보육현장실습을 4주 직접실습과 2주 간접실습으로 진행한 경우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제출 시, 간접실습확인서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제출
- * (2주 간접실습 방식) 양성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1학점(15시간 이상)에 준하는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참관 등

II. 보육교사 자격기준

- 보고방법

- 보육현장실습을 4주 직접실습과 2주 간접실습으로 진행한 경우,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제출 시 간접실습확인서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제출
- 6주 240시간을 모두 직접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간접실습확인서' 제출 불필요



III.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방법

나. 시스템 신청

○ 단체접수 기본정보 작성

메뉴 [포털] → [자격] → [단체 자격증 신청] → [단체접수 기본정보 작성]

수령인	연락처	02-4
유대전화	010-4	
주소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한국보육진흥원 5층	
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한국보육진흥원	학과 아동학과
법인유형	학교	졸업일자
※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input type="checkbox"/> 기본정보와 동일함		
수령인		
수령인 유대전화	수령인 일반전화	
배송지 주소	주소검색	

내용단계 ▶

- 1) 회원가입 시 작성한 단체신청 교육기관 기본정보 확인
 - 기본정보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회원정보 수정
- 2) 단체신청 교육기관의 졸업일자(수료일자) 입력
- 3) 단체 자격증을 수령할 교육기관의 배송지 정보 등록
 - 기본정보의 주소와 배송지정보가 동일한 경우 '□ 기본정보와 동일함'에 체크박스 선택
 - 기본정보의 주소와 배송지정보가 상이한 경우 수령인, 수령인 연락처, 배송지 주소 등록
- 4) 다음단계 버튼 클릭
 - 다음단계 클릭 후에는 이전단계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주의 요망

III.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방법

○ 신청자 개별정보 작성

메뉴 [포털] → [자격] → [단체 자격증 신청] → [신청자 개별정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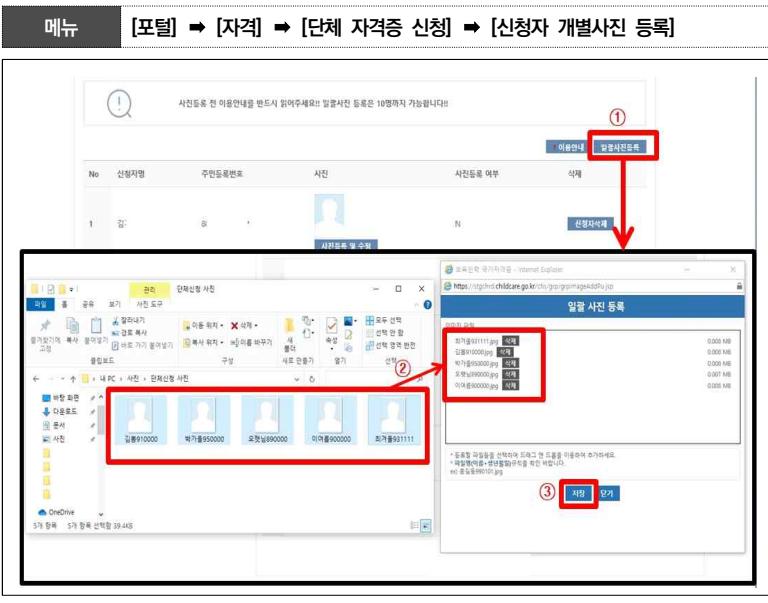
신청자 정보 입력 전 이용안내를 반드시 읽어주세요!!

A	B	C
신청자명	주민등록번호	
김봄	000000-0000000	
이여름	000000-0000000	
박가을	000000-0000000	
최겨울	000000-0000000	
오햇님	000000-0000000	

다음단계 ▶

- 1) 신청자 정보 입력 전, '이용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자 정보 작성 방법 확인
- 2) 단체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한 엑셀파일을 '엑셀파일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등록
 - 엑셀파일 A열 1행 '신청자명', B열 1행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2행부터 신청명단 작성
- 3) 리스트에 인원을 추가할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수기 작성 가능(선택)
- 4) 등록된 신청자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청정보 검증' 클릭
 - 신청정보 검증 결과 'Y'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진행 가능
 - 자격증 기발급자이거나 신청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여부'에 N으로 표기되어 단체 신청이 불가하므로 별도 개인 신청 필요
- 5) 엑셀파일을 불러오지 않고 수기로 작성한 경우, 입력한 단체 리스트 별도 저장 가능(선택)

○ 신청자 개별사진 등록



- 1) '일괄사진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최대 10명까지 일괄 사진 등록 가능
- 2) 등록할 사진 파일 선택하여 일괄 사진 등록창에 드래그하여 이동
 - 파일명 형식은 '이름+생년월일'로 설정하여 단체 신청자의 사진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
* 예) 진흥원000612, 홍길동011225
- 3) 1회 최대 10명까지 등록하고 저장한 후, 반복하여 전체 대상자 사진 등록
 - 사진 등록 이후 사진 변경을 원하는 경우, 'マイ페이지'에서 수정 가능
 - 사진 변경은 진행상태가 '인정' 단계까지 가능하며 '인정' 상태 이후에는 수정 불가

III.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방법

○ 수수료결제

The screenshot shows the payment method selection step. Step 1 highlights the payment method selection area where three options are listed: 신용카드 (Credit Card), 가상계좌 (Virtual Account), and 실시간계좌이체 (Real-time Transfer). Step 2 highlights the checkbox for agreeing to the refund regulations.

- 1) 수수료결제 방법 선택
 -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 중 선택 가능하며 현금 직접 납부는 불가함
 - 가상계좌 결제의 경우 입금기한 안에 수수료 입금 필요
- 2) 수수료 환불 규정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 '서류접수완료 전'에는 100% 환불이 가능하나, '서류접수완료 이후'에는 자격증 신청취소 및 수수료 환불이 불가하며 자격검정 결과 불인정인 경우도 포함
 - * 신용카드 및 실시간계좌이체 결제의 경우 자격증 신청취소 시, 자동 환불 가능
 - * 가상계좌 결제의 경우 '자격증 신청취소 및 수수료 환불 요청 공문' 제출이 필수이며, 환불 절차에 따라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신용카드 또는 실시간계좌이체 방법 추천
 - * 현금 동봉시 환불불가

○ 신청완료(전달사항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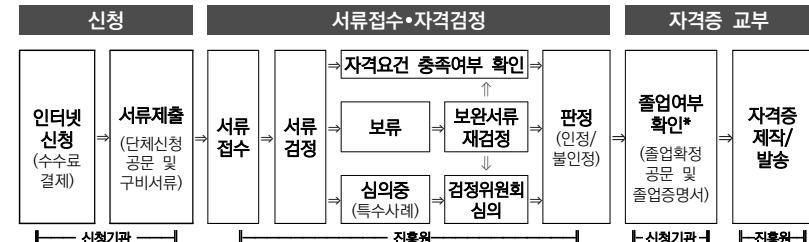
메뉴 [포털] → [자격] → [단체 자격증 신청] → [신청완료-전달사항 등록]

- 1) 자격증 단체신청 완료 여부 확인
- 가상계좌 결제의 경우 입금기한 안에 수수료 입금 필요
- 2) 자격증 단체신청과 관련하여 전달사항이 있는 경우 전달사항 등록 후, 등록버튼 클릭
※ 예) 단체신청자 중 동명이인이 있거나 신청자 성명 변경 사례가 발생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 3) 제출서류 준비 시, 신청자 명단 리스트 출력하여 단체신청 공문과 함께 제출
※ 리스트 순서대로 개별 제출서류 준비 필요

III.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방법

3 단체신청 진행 절차

● 업무절차



* 출입여부 미확인 시, 자격증 발급 불가 및 자격 취소

● 신청진행현황 확인

가. 진행현황 조회

- 단체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자의 진행현황 조회 가능
 - 단체신청 리스트 출력이 가능하며 개별 신청자의 진행현황 확인 가능
 - 수수료 결제방법, 배송지 주소, 사진 변경 가능

메뉴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나의 자격증 진행현황(단체)]

- 1) '단체번호' 클릭 시 개인별 신청진행현황 확인을 통해 진행상태 확인 가능
- 2) 개인별 접수번호 클릭 시 해당자의 상세내역(보류사유, 검정결과, 자격번호 등) 확인 가능
*** 자격 검정결과 '인정'이라도 자격번호는 출입일 이후 확인 가능**
- 3) 사진등록 버튼 클릭 시, 사진 변경 가능
- 4) 가상계좌 결제의 경우, 입금기한에 미입금 시 계좌번호가 자동 소멸되므로 결제방법 변경을 통해 수수료 결제 방법을 재선택하여 입금 진행
- 5) 자격증 수령 배송지를 변경할 경우 '배송지 수정' 버튼 클릭하여 주소 변경 등록
*** 자격증 수령 배송지는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 일괄 수령만 가능**

○ 검정 진행상태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검정 결과에 따라 진행상태가 변경됨

진행상태		내용
서류접수완료	신규/추가 서류접수 후, 자격검정 대상	→ 검정 대기
보류	자격검정 결과 보완서류 추가 제출 대상	→ 보완서류 제출 시 재 검정 (보류된 이후, 30일 이내 보완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인정	자격요건 충족으로 인정	→ 자격심사 종료(자격증 교부)
불인정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불인정	→ 자격심사 종료(자격증 교부 불가)
심의중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 대상	→ 검정위원회 심의 대기

○ 보완서류 제출 방법

- 제출한 서류 검정 후, 자격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단체신청 담당자 연락처로 보류사유 일괄 통보
- 단체신청 담당자는 개별 신청자 보류사유를 확인하여 개별 보완서류를 취합 후 서류 재제출

* 보류 확인방법: 홈페이지 > 단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단체번호' 클릭 > 진행상태가 '보류' 상태인 대상자 '개인접수번호' 클릭

III.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방법

○ 단체 자격증 발송방법

- 자격검정 결과 '인정' 상태인 대상자의 자격증을 제작하여 단체신청 시 등록한 배송지 주소로 발송
- * 대학 등의 경우, 출입학점 공문 및 출입증명서가 확인된 교육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자격증 제작·발송
- * 전체 '인정' 상태가 아닐 경우, 최대 2~3번에 나누어 발송되며 보류 대상자가 많은 경우, 자격증 발송 불가

● 자격취득 확인서 발급

○ 자격검정 결과 '인정' 상태인 경우, 취득한 자격에 대한 국문확인서 및 영문확인서를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함

- 다만, 해당 '자격취득 확인서'는 자격증으로 대체 불가하며 자격취득 내역을 확인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메뉴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현황(자격)] → [자격취득 확인서 출력]
----	---

[보육교직원](#) [자격](#) [인력뱅크](#) [자료실](#) [정보마당](#) [교육](#)

[마이페이지](#) [자격확인서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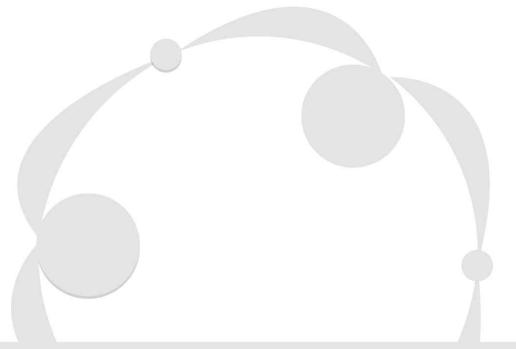
● [인정내역리스트](#)

신청일자	접수번호	신청자격	자격증종류	구분	한글확인서	영문확인서
0000.00.00	보육교사	보육교사 0급	보육교사 0급	단체	자격취득증명	자격취득증명

● [자격증인서 출력](#)

● [자격취득 확인서](#)

● [LETTER OF CONFIRMATION](#)



IV. 질문과 답변

1. 자격기준 및 발급

Q1	대학에 편(재)입학 하는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요?
A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편(재)입학 하는 경우 동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육과정 이수 및 학위취득 조건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예시) 2018년에 3학년으로 편(재)입학한 경우, 2016년도 입학생과 동일한 자격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대면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대면 교과목 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Q2	대면 교과목은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석 수업(8시간)을 나누어서 수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2	출석 수업의 운영방식은 교육기관의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석 수업(8시간)을 나누어서 수강 가능하며 과목당 총 8시간 이상 대면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다만, 1회 이상 출석 시험은 8시간 출석 수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학점은행제를 통해 2017년 8월에 학위 취득을 했는데 보육관련 교과목 중 1과목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1과목만 학점은행제를 통해 추가로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3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인정 가능합니다.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 후 학위 미취득시, 교과목 및 학점 인정이 불가하므로 현행(3개 영역, 17과목 51학점) 기준에 맞춰 부족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하여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Q4	2017년 전에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휴복학 이후,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개정 이전의 교과목(6개 영역)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이수하여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A4	2017.1.1. 이전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이나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개정 이전 교과목 기준(6개 영역) 대신 개정 교과목 기준(3개 영역)으로 모든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Q5	단체 신청 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개별 신청해야 하나요?
A5	5명 이상부터 단체 신청이 가능하며, 미만인 경우 개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Q6	보육교사 자격증을 단체 신청한 경우, 자격증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A6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단체로 자격증을 신청한 경우,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배송지로 자격증이 일괄 배송되므로 자격증을 개인적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교육기관으로 배송된 자격증에 대한 자격증 원본 수령 방법은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격증 배송 전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자격번호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III.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방법

Q7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대상자가 본인의 자격신청 진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회원가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서류접수 현황, 보류내용, 자격번호 등의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A7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대상자가 본인의 자격신청 진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회원가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서류접수 현황, 보류내용, 자격번호 등의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Q8	단체신청 접수 후 졸업 확정 공문 발송 시점에서 졸업 취소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제출한 개별 서류는 반환 받을 수 있나요?
A8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서류접수 이후 수수료 환불 또한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9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A9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내 보육관련 교과목 있는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원본을 구비 서류들과 함께 제출 바랍니다.
Q10	유사교과목 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법령상의 교과목과 교과목 명칭이 다른 경우 유사교과목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표준교과개요 내용 등을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Q11	지난번에 유사교과목 심의 요청하였는데, 이번에도 해야 하나요?
A11	과거 유사교과목 심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 교육기관명, 학과, 해당년도, 이수학기 대상자의 자격 기준이 필수적으로 동일해야만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 유사교과목 심의 결과 불인정된 경우라면 이후에 유사교과목 심의 요청을 하여도 심의 결과는 같습니다.

2. 보육실습

Q1	2021년도 1학기에 보육실습Ⅰ, 2021년도 2학기에 보육실습Ⅱ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점은 각각 2학점과 1학점으로 나누어 이수한 경우 합산하여 인정되나요?
A1	보육실습Ⅰ,Ⅱ의 합이 총 3학점 이상인 경우 인정이 가능하며 보육실습 교과목을 Ⅰ,Ⅱ로 나누어 개설한 경우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전·후 방학 포함)에 1회씩 2회로 실습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육실습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 합산이 가능하며 다른 교과목은 학점 합산이 불가합니다.
Q2	보육현장실습 시작 당시 실습기관이 평가제 결과 B등급이었으나 실습기간 도중 C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실습 인정이 가능한가요?

3. 신청취소 및 환불

Q1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을 하고 서류검정도 진행되었으나 출업을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 환불이 가능한가요?
A1	수수료 환불 규정에 따라 신청취소 및 수수료 환불은 '서류접수완료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자격증 단체신청 이후 서류접수에 따른 검정이 진행되었으므로 수수료 환불이 불가하며, 출업을 유예한 경우 학위취득 조건이 불충족됨에 따라 불인정 처리됩니다.
Q2	단체 자격증 신청을 취소하고 환불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환불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2	환불 요청에 따른 입금처리는 환불 요청 공문 접수일로부터 익월 25일 내외로 처리됩니다. 다만, 하반기 단체신청(7~9월)의 경우 기준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환불 요청의 경우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자동 환불이 되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결제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 키보드에서 [Ctrl] + [Shift] + [Del] 동시에 입력 – 검색 데이터 지우기 – [F5]브라우저 새로고침

II. 원도우 업데이트 실행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windows update] – [업데이트 설치] 클릭 후, '모든 사항'에 대해 업데이트 진행

Q3 홈페이지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PC에 캐시나 기타 임시저장 파일이 지정해놓은 저장용량보다 크거나, 남은 공간이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 캐시 삭제(임시인터넷파일삭제) 후 PC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Q4 자격증 신청 및 취득을 했는데 내역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인사기록카드 내, 인사기록카드 가져오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기록카드 가져오기 방법 : [홈페이지] –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인사기록카드 등록/수정] – [설명확인] – [인사기록카드 가져오기]

4. 홈페이지 이용

Q1	단체신청 아이디/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단체 아이디, 비밀번호 분실 시,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1661-5666) 또는 카카오톡 (ID: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자격)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2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 및 사진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거나 홈페이지 및 결제 화면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홈페이지 및 수수료 결제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I, II를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I. 캐쉬삭제

[크롬] – 키보드에서 [Shift]+[F5] 동시에 입력 – [검색기록삭제] – [즐겨찾기 웹 사이트 데이터보존, 임시 인터넷 파일 및 웹사이트 파일, 쿠키 및 웹사이트 데이터, 기록] – [삭제] 클릭 – [F5]브라우저 새로고침



V. 부록

부록 1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공문 예시(대학교)

※ 본 공문 양식은 단체신청 기관에서 공문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예시 양식입니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양식 사용 시, 예시 공문에 안내한 내용을 작성하여 공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

수 신 한국보육진흥원장
경 유
제 목 ○○○대학(교) ○○학과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본 ○○○대학(교) ○○학과 ○○년도 졸업자 총 ○○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단체로 신청합니다.

졸업일자	신청인원
○○○○년 ○월 ○일	○○명

붙임. 단체 신청자 리스트 1부. 끝.

○○○대학(교) 총장 또는 대학장 직인

기안자직위 ○○○ 검토자직위 ○○○ 결재권자직위 ○○○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 주소

※ 공문 작성 시 최종 결재는 신청 대학(교)의 총장 또는 대학장의 직인에 힘하여 인정함. 학교(부장)의 직인 인정 불가
※ 단체신청 공문의 졸업일자와 졸업예정증명서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처리 불가

V. 부록

부록 2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공문 예시(보육교사교육원)

※ 본 공문 양식은 단체신청 기관에서 공문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예시 양식입니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양식 사용 시, 예시 공문에 안내한 내용을 작성하여 공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교사교육원

수 신 한국보육진흥원장
경 유
제 목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본 ○○○ 보육교사교육원 ○○년도 수료자 총 ○○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단체로 신청합니다.

교육종료일	신청인원
○○○○년 ○월 ○일	○○명

붙임. 단체 신청자 리스트 1부. 끝.

보육교사교육원장 직인

기안자직위 ○○○ 검토자직위 ○○○ 결재권자직위 ○○○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 주소

※ 공문 작성 시 최종 결재는 보육교사교육원장의 직인을 받아야 함
※ 단체신청 공문의 수료일자(교육종료일)와 수료증명서의 교육종료일자가 상이할 경우 처리불가

부록 3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자 졸업학정 공문 예시

※ 본 공문 양식은 단체신청 기관에서 공문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예시 양식입니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양식 사용 시, 예시 공문에 안내한 내용을 작성하여 공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

수 신 한국보육진흥원장

경 유

제 목 ○○○대학(교) ○○학과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자 졸업학정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본 ○○○대학(교) ○○학과 ○○년도 단체 신청자 중 총 ○○명이 최종 졸업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졸업일자	신청인원	졸업자
2023년 ○월 ○일	○명	○○명

- 단체신청인원 중 ○명은 졸업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졸업취소자 성명	생년월일	취소사유
1	홍길동	000000	

* 취소자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

- 붙임 1. 졸업학정자 명단 1부
2. 졸업증명서 00부. 끝.

○○대학(교) 총장 / 대학장 직인

기안자직위 ○○○ 검토자직위 ○○○ 결재권자직위 ○○○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 주소

※ 공문 작성 시 최종 결재는 신청 대학(교)의 총장 또는 대학장의 직인에 힘하여 인정함. 학과(부장)의 직인 인정 불가
※ 졸업예정일자와 실제 졸업일자가 변경된 경우, 졸업학정 공문에 변경내용 기재 필수

V. 부록

부록 4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자 환불요청 공문 예시

※ 본 공문 양식은 단체신청 기관에서 공문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예시 양식입니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양식 사용 시, 예시 공문에 안내한 내용을 작성하여 공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수 신 한국보육진흥원장

경 유

제 목 ○○○대학(교) ○○학과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자 환불요청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본 ○○○대학(교) ○○학과 ○○년도 단체신청 인원 중 ○명의 신청취소에 따라 환불을 요청합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1	홍길동	000000	○○은행	0000-00-00000	홍길동

- 붙임 1. 환불요청자 리스트
2. 환불요청자 통장사본. 끝.

○○○대학(교) 학과장 직인

기안자직위 ○○○ 검토자직위 ○○○ 결재권자직위 ○○○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 주소

※ 환불요청 공문 작성 시 최종 결재는 신청 대학(교)의 학과(부장)의 직인 가능
※ '나의 진행현황'이 '서류접수완료'가 된 이후에는 신청취소 및 수수료 환불 불가(검정결과가 불인정인 경우도 포함)

부록 6 간접실습확인서

※ 본 양식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접실습확인서

보육실습생 ○○○는 ○○○○년 ○학기에 보육실습 6주 240시간 중 2주를 간접실습으로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성명 : ○○○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 양성교육기관 : ○○○대학교 ○○학과
- 학번 :
- 간접실습 내용

담당교수	간접실습기간	간접실습시간	간접실습방법
○○○	'21.00.~ 00.	○○시간	세부 운영방법 및 내용 기재

년 월 일

학과장

(서명 또는 인)

※ 간접실습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대체운영 가능(양성기관 내에서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참관 등 간접방식으로 운영)

※ 2주 간접실습 이수 시, 4주 직접실습에 대해서는 기준과 동일하게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필수

※ 6주 240시간 동안 직접실습을 이수한 자는 '보육실습확인서'만 제출

V. 부록

부록 7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 본 양식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보육실습생 ○○○는 아래의 보육실습기간 동안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 지도 기준을 준수하여 실습을 지도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성명 : ○○○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 실습기관 : ○○○ 어린이집(유치원)
- 실습기간 : 0000.00.00 ~ 0000.00.00
- 실습 지도교사 및 실습생

실습 지도교사	실습생	양성교육기관
○○○	○○○	○○○대학(교) ○○○학과
	○○○	○○○대학(교) ○○○학과
	○○○	○○○ 교육원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서명 또는 인)

※ 5번 '실습 지도교사 및 실습생'에는 실습 지도교사가 동일한 보육실습 기간 내에 지도한 전체 실습생의 성명, 양성교육기관(학교 및 학과명, 교육원명)을 작성하여야 함

부록 10 유사교과목 확인서

* 본 양식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교과목 확인서			
법령교과목	유사교과목명 (이수한 교과목명) *이수한 학기 표기	유사교과목 인정 사유	비고

위 사람이 이수한 교과목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법령 교과목에 해당됨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장 ○○○ (인)

V. 부록

부록 11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관리 매뉴얼

* 보육실습생 등록 및 관리절차

1. 보육실습생 등록

- 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cpmss.childcare.go.kr)에 접속 및 로그인



- ② 메뉴보기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 관리 > 등록 > 팝업창 유의사항 확인 후, 등록 클릭



③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입력 후, 실명인증

①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작성

② '실명확인' 클릭

③ 실명인증 후, '확인' 클릭

④ 실습기간 설정 후, '실습인정 확인' 버튼 클릭하여 실습생 등록 가능여부 확인

① 달력 아이콘 클릭하여 실습기간 설정

② '실습인정 확인' 클릭

③ '확인' 클릭

* '실습인정 확인' 버튼 클릭 후 실습생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어린이집의 실습기관 기준 충족여부 확인 필요

V. 부록

⑤ 실습시간 설정 후, 저장하여 '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 등록' 확인

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설정

② '저장' 클릭

③ '확인' 클릭

*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 설정 시, 총 실습시간 자동계산

* 요일 변경을 원할 경우, 요일변경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변경 가능

⑥ 실습지도교사 추가 버튼 클릭 후, 재직중인 보육교사 1급 지도교사 선택

① 추가 버튼 클릭

② 이름 끝백간 클릭

③ 1급 대상자 선택 시, 자동으로 자격급수 및 번호 작성

④ 풀길동 무궁화

⑤ 추가 저장

* 실습 지도교사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지도교사 모두를 등록하여야 함

⑦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여부 선택 후, 저장하여 보육실습생 등록 완료

① 동일 실습기간 내,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여부 선택

② 저장 버튼 클릭

③ 확인 버튼 클릭

④ 보육실습생 등록 완료 확인 버튼 클릭

※ 실습 지도교사는 동일 실습기간 내, 보육실습생을 3명 이내로 지도하였습니까? 예

⑤ 저장 메시지

보육실습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2. 보육실습내용 제출

- ① 실습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실습생의 정보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 ② 보육실습확인서 미리보기 화면의 정보 확인 후, '제출' 클릭 후, 팝업창의 '확인' 클릭

* 실습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제출 처리되어 제출된 이후에는 내용 수정 불가

V. 부록

3. 보육실습확인서 인쇄

- ① 보육실습생관리 조회 화면에서 대상을 조회하고 인쇄 대상을 선택한 후, '인쇄' 클릭

- ② 인쇄 미리보기 화면에서 등록 정보 확인 후, 출력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학과장 직인 날인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단체신청 방법 안내

발 행 인 : 한국보육진흥원장

발 행 처 : 한국보육진흥원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전 화 : 02) 6901-0100(代)

홈페이지 : <http://www.kcpi.or.kr>

* 이 책을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